

---

---

서학동 예술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

2020. 4.



전 주 시

#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가. 계획의 배경

- 사업지구는 전주 한옥마을 및 전주천 남측에 접하여 있는 노후 주거지로서 한옥마을 일원의 지가상승 등으로 2010년부터 문화예술인들이 자발적인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유입되면서 기존주민과 어우러진 예술마을을 형성한 지역임
- 예술인 유입 전에는 교사와 학생이 많이 살아 선생촌이라 불리던 지역으로 전주교육대학교 기숙사 및 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가 있고 그 남측 일원에는 다가구주택(원룸)이 밀집하여 있음
- 2012년부터는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서학동 예술마을 축제, 토요일 문화 예술장터, 정기 음악회,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2016년 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후, 2017년 도시재생 뉴딜지역(광역/일반근린형)으로 선정되고 전주시 미래유산(4번)으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 12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임
- 최근 문화예술 체험공간과 예술을 덧입힌 골목 투어 등으로 한옥마을과 연계된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지역 활성화에 대비한 도시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 나. 계획의 목적

- 도시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고 무분별한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별표 2]에 근거하여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바이다.

<표 1.2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별표 2]

### 1.3 계획의 추진 경위

- 2020. 01.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 2020. 02.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20. 03.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접수(예정)
- 2020. 03. :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예정)
- 2020. 05.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예정)
- 2020. 06. :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예정)

### 1.4 계획의 내용

#### 가. 계획명

- 서학동 예술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 나. 공간적 범위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서서학동 일원
- 면 적 : 167,777.3m<sup>2</sup>

#### 다.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19년, 목표연도 2030년

#### 라. 사업시행자

- 전주시

#### 마. 승인기관

- 전주시

**바. 대안의 검토 및 선정**

**(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 “대안”이라 함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한다.
- 대안의 선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에 의거하여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으며, 계획의 건전성 및 적정성을 평가하는 “계획비교” 및 “시기·순서”에 대한 대안을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표 1.4 - 1> 대안의 선정방법**

대안종류	대안의 선정방법
계획비교	○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입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기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2) 계획비교에 대한 대안 검토**

- 계획 미수립(No Action) 및 계획수립(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4 - 2> 계획 비교

구 분	No Action (대안1)	Action(대안2)
계획수립 여부	계획 미수립 시	계획수립 시
내용	○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장점	○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의 환경질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토지이용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며,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환경 훼손 및 오염물질 발생이 미미함	○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 체계적인 정비에 따른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토지이용 효율화 증대 ○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도모 ○ 도시개발에 따른 지역경쟁력 강화
단점	○ 주택공급 여건의 변화와 소유의 다원화 등 급격하게 변하는 주거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움 ○ 지구단위계획 미수립으로 향후 비계획적인 난개발 우려	○ 추후 개별 개발계획에 따른 지형 변화, 불투수 면적 증가 및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 훼손, 오염물질 발생이 예상됨
선정안	×	●
<p>○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토지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p> <p>○ 계획을 시행할 경우, 추후 공사시 일부 환경영향이 예상되나 대상지역 여건에 맞는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이행토록 하여 이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것임</p>		

<표 1.4 - 3> 대안별 세부항목 비교

구 분		계획 미수립 - 1안	계획 수립 - 2안
내 용		No Action	Action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 현 상태 유지시 향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물다양성·서식지 훼손이 우려됨	○ 인근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한 재정비로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에 대한 영향은 미미함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현 상태 유지시 향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형 및 생태축 훼손이 우려됨	○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로 지형 등의 변화가 예상되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그 영향은 미미함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현 상태 유지	○ 주변 경관변화가 예상되나 변화의 크기는 미미함
	수환경의 보전	○ 현 상태 유지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국토관리 가능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 현 상태 유지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환경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계획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현 상태 유지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생활환경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현 상태 유지시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으로 무분별한 토지이용 우려	○ 인근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생활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토지이용의 변화 없음.	○ 인근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한 재정비로 토지이용상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선정안		×	●

**(3) 시기·순서에 대한 대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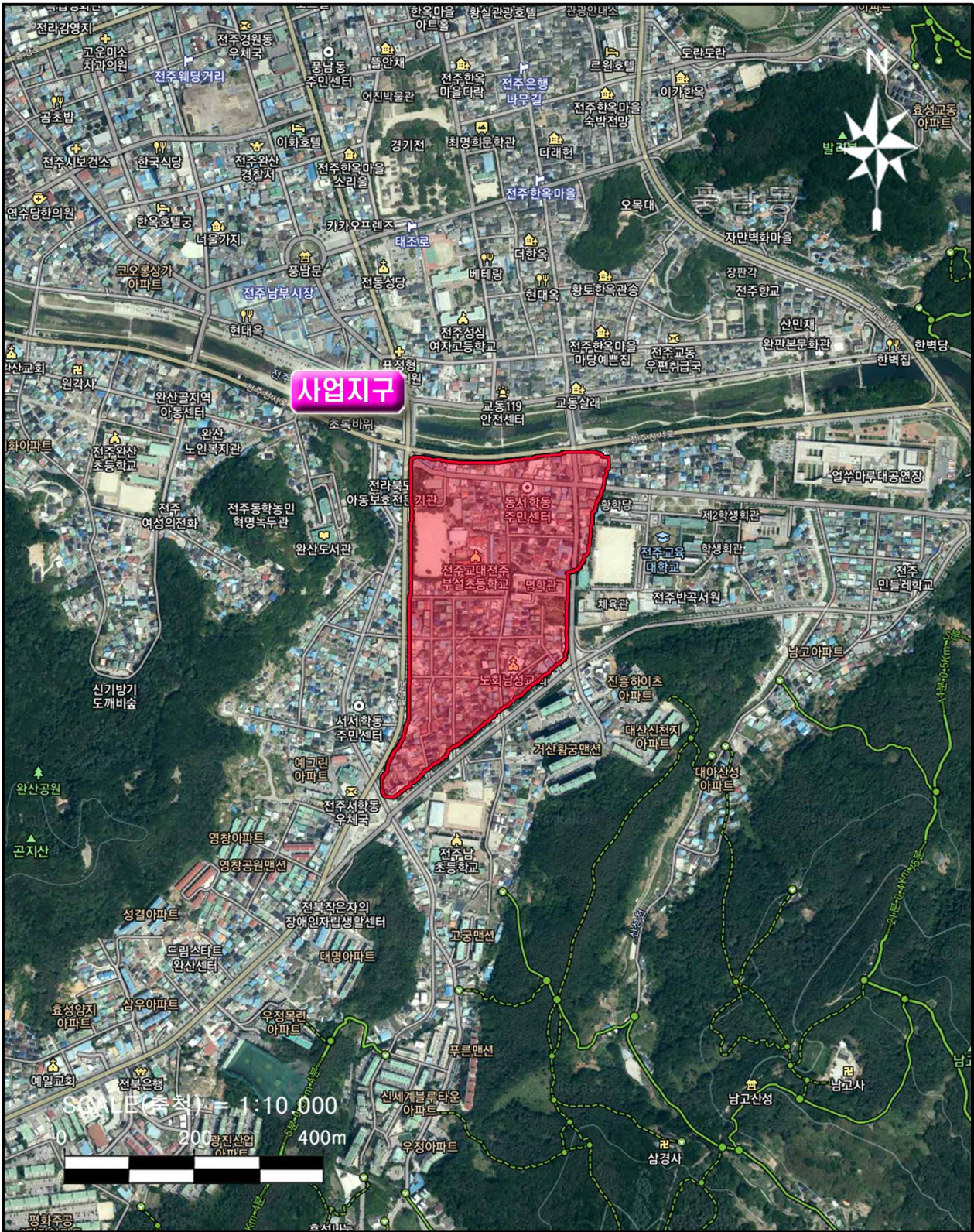
- 본 계획수립에 대한 시기·순서에 대한 대안을 선정하여 비교·검토하였으며, 본 계획에 적합한 일괄 수립을 선정하였다.

**<표 1.4 - 4> 시간·순서 대안별 평가**

구 분	대안 1	대안 2
개요	○ 일괄 수립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수립 등을 통해 금회 일괄적으로 계획 수립	○ 단계별 수립 -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 후 장기적으로 단계별 계획 수립
장점	○ 단계별 수립에 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절차 소요로 인해 시간 및 비용적으로 경제적인 계획	○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계획 수립으로 향후 민원발생 최소화
단점	○ 일괄적인 계획 수립으로 시민의견 수렴이 미흡	○ 일괄 계획 수립에 비해 복잡한 행정절차, 계획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시간 및 비용적으로 비경제적임
선정안	●	×



(그림 1.4 - 1) 계획지구 위치도



(그림 1.4 - 2) 계획지구 인공위성도

## 제2장 대상지역의 설정

###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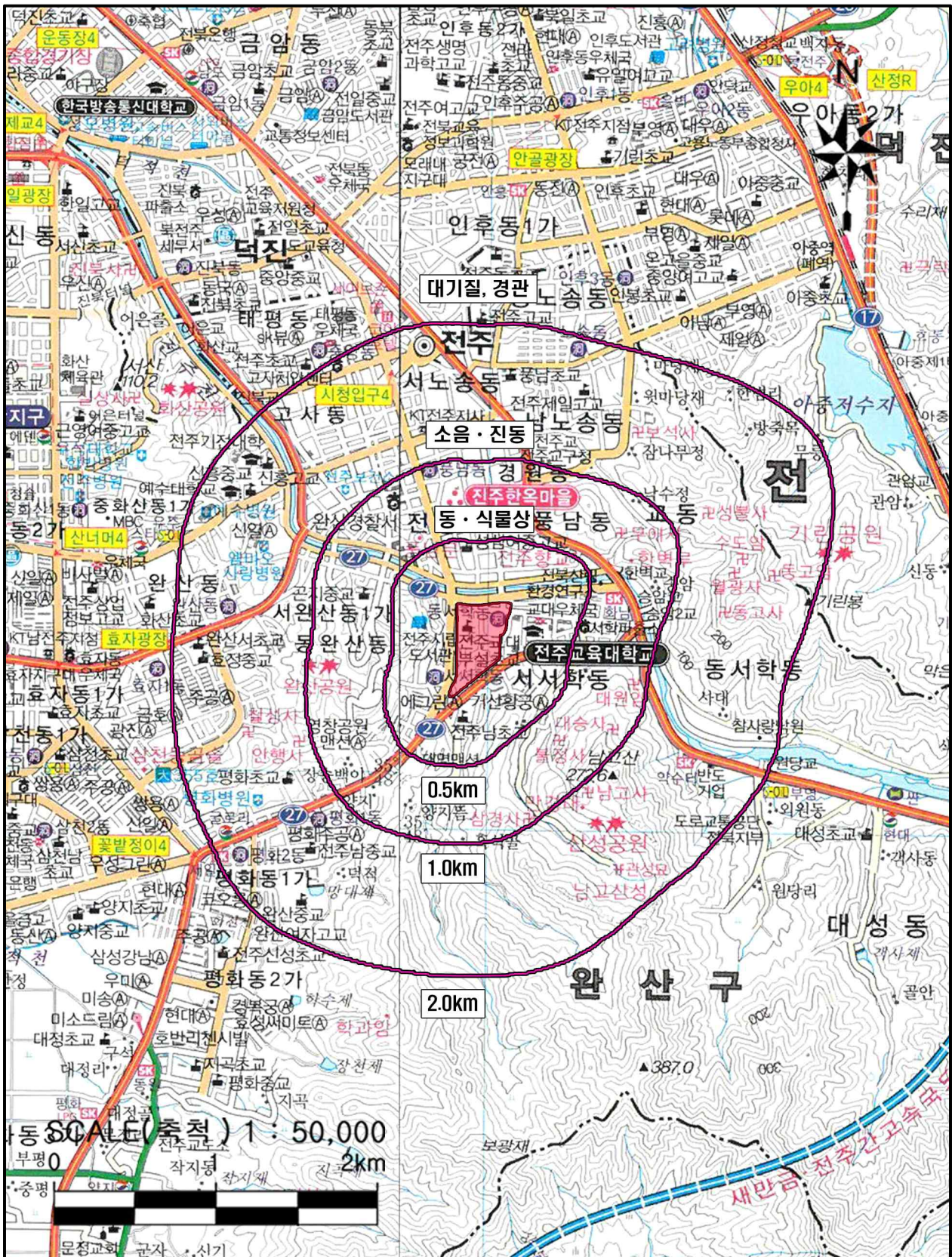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에 준하여 설정하였다.

〈표 2.1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구분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선정기준	평가대상지역		
			공간적	시간적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계획수립시 상위 및 관련 행정 계획 반영여부	○ 관계 행정기관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 계획지구 편입토지를 중심으로 계획 및 입지 검토	○ 계획지구	-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사업시행시 동·식물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 주변0.5km 이내	○ 공사시
		자연환경자산	○ 사업시행시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사업시행시 지형 및 생태축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위락·경관	○ 사업시행시 경관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 주변2.0km 이내	○ 운영시
	수환경의 보전	수질 (수리·수문)	○ 사업시행시 토사유출에 의해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 계획지구 ○ 하류수계	○ 공사시 ○ 운영시

<표 2.1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계속)

구분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선정기준	평가대상지역		
			공간적	시간적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기상 자료를 조사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분석의 기초 자료로 이용	○ 전주기상대	-
		대기질	○ 공사장비 가동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 주변 2.0k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온실가스	○ 공사시 장비가동 및 자재 투입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 공사시
		악취	○ 주변 악취 배출시설로 인한 계획지구 내 악취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 공사시
		토양	○ 공사장비 가동, 지장물 철거 등에 따른 토양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 공사시
		소음·진동	○ 공사장비 가동시 소음·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 주변 1.0km 이내 (500m 이내 중점 검토)	○ 공사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운영시 오수발생 및 폐기물 발생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 운영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지장물 철거, 장비사용, 투입 인력 등에 따른 각종 폐기물 발생 ○ 운영시 각종 생활폐기물 발생	○ 계획지구 ○ 전주시	○ 공사시 ○ 운영시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 계획지구	○ 운영시	
	주거·산업	○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거·산업의 변화	○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일원	○ 운영시	



(그림 2.1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 2.2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가.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기 위해 사업의 특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설정하였다.

〈표 2.2 -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선정

구 분		중점평가항목	일반평가항목	제외 항목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서식지 보전	○ 동·식물상 ○ 자연환경자산	—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지형·지질	—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위락·경관	—	—
	수환경의 보전	○ 수질	○ 수리·수문	○ 해양환경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 대기질 ○ 토양 ○ 소음·진동	○ 기상 ○ 온실가스 ○ 악취	○ 일조장해 ○ 전파장해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환경기초시설 의 적정성	—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친환경적 자원순환	—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토지이용	—	—
	인구·주거·산업	○ 주거 ○ 산업	—	○ 인구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표 2.2 - 2〉 중점 평가항목 선정 사유

구 분		평가항목	선정 사유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대상 지역의 식생 및 서식지 훼손 ○ 사업시행에 따른 동·식물상의 변화
		자연환경 자산	○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습지 보호지역 등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부지정지로 인한 지형 변화 및 토량 이동 ○ 절·성토로 인한 사면발생, 토사 유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위락·경관	○ 대상 지역의 위락·경관요소 파악 및 사업시행으 로 인한 위락·경관 영향
	수환경의 보전	수질	○ 공사시 토사유출 및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영향 ○ 운영시 생활 오수 및 비점오염원 발생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 공사시 장비가동 및 토공사에 따른 대기오염물 질 발생 ○ 운영시 연료사용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
		토 양	○ 공사시 장비 가동에 따른 폐유 유출에 따른 토 양 오염 발생
		소음·진동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예상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 처리 등에 관한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장비가동에 의한 폐유 및 투입인부에 의 한 폐기물 및 분뇨 발생 ○ 운영시 이용인구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이용계획상의 변화
	주거		○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거 변화
	산업		○ 시설 입지에 따른 산업 현황의 변화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표 2.2 - 3〉 일반 평가항목 및 제외항목 선정 사유

구 분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
일반 평가항목	기상	○ 기상 현황 파악 및 대기질 예측 기초자료 활용
	수리·수문	○ 수계현황 파악
	악 취	○ 주변 악취유발업 가동에 따른 사업지구 내 악취 영향
	온실가스	○ 공사시 장비가동 및 자재투입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인구	○ 인구 현황 파악
제외항목	해양환경, 전파장해, 일조장해	○ 사업시행과 연관 없음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나. 평가항목별 예측·평가 방법 및 관련 자료**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평가항목별 예측·평가에 사용된 방법 및 관련 자료는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표 2.2 - 4〉 평가항목별 예측·평가 방법 및 관련 자료(1/2)

구 분	평가항목		예측·평가 방법	관련 자료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 행정계획과의 일관성 여부 ○ 다른 행정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 사업관련 기본계획서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을 고려한 계획비교, 입지 대안 설정·분석	○ 사업관련 기본계획서
입지의 타당성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계획지구의 현존식생도, 생태자연도 조사 ○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 변화 분석	○ 현장조사 자료 ○ 전국자연환경조사 보고서 ○ 한국 동·식물도감
		자연환경 자산	○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구역 등 자연환경 자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지형·지질 현황 파악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	○ 지형도 및 지질도 ○ 사업관련 기본계획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위락·경관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위락·경관 ○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예측·평가	○ 주변 지형분석 ○ 사업관련 기본계획서
	수환경의 보전	수 질 (수리·수문)	○ 공사시 발생 토사로 인한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 현장인력에 의한 발생 오수의 영향 예측·평가 ○ 비점오염원에 의한 하류 수계 영향 예측·평가 ○ 운영시 용수사용량, 오수발생량 예측·평가	○ 수질 현황 측정자료 ○ 통계연보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건설표준품셈(2018) ○ 하수도 시설기준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 ○ 사업관련 기본계획서

<표 2.2 - 4> 평가항목별 예측·평가 방법 및 관련 자료(2/2)

구 분	평가항목		예측·평가 방법	관련 자료	
입지의 타당성	생활환경의 안정성	기 상	○ 계획지구 인근 기상대의 10년간 기상자료를 분석·정리	○ 기상연보	
		대기질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 및 부지정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영향을 대기확산 모델을 이용하여 예측·평가	○ 대기질 현황측정 자료 ○ 건설표준품셈(2018) ○ 대기질 예측 모델 ○ 사업관련 기본계획서	
		악취	○ 악취 배출시설 및 발생원 세부 조사 ○ 주변 악취유발업에 따른 사업지구 내 악취 영향예측·분석	○ 악취 현황측정 자료 ○ 악취실태 조사결과(2017) ○ 악취관리 편람(2012)	
		환경기준 부합성 온실가스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 및 자재투입 등에 따른 온실가스 영향예측·평가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2015) ○ 에너지열량 환산기준(2015)	
		토 양	○ 공사시 작업인부에 의한 토양오염 영향 예측 ○ 공사장비 폐유 등으로 인한 토양 오염 예측·평가	○ 토양 현황측정 자료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현황(2016) ○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백서(2013)	
		소음·진동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을 거리감쇠식을 이용하여 예측·평가	○ 소음·진동 현황측정 자료 ○ 건설기계류 소음특성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운영시 급수 및 오·폐수처리 적정성 여부 검토	○ 통계연보 ○ 사업관련 기본계획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기물 발생 현황조사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처리대책 수립	○ 통계연보 ○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지목별 토지이용 변화 및 시설물 계획	○ 통계연보 ○ 사업관련 기본계획서
		주거		○ 통계자료 및 사업분석을 통한 주거 변화예측	○ 통계연보
		산업		○ 통계자료 및 사업분석을 통한 산업 변화예측	○ 통계연보

## 제3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결과

### 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개요

- 주관부서 : 전주시청
- 심의기간 : 2020년 01월 22일 ~ 02월 28일 (공휴일 제외 30일)
- 운영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위원장 포함 총 10명(협의기관 1명, 전문가 4명, 공무원 4명, 시민 2명)
- 심의의견 조치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시 반영

〈표 3.1 - 1〉 심의위원 명단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의견제시	비고	
1	위원장	전주시 생태도시국	국장	최무결	-	당연직
2	위원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과장	전국환	○	협의기관의 장 지명 공무원
3	위원	전주시 환경위생과	과장	은시문	○	전주시장 지명 공무원
4	위원	전주시 도시재생과	과장	김성수	○	전주시장 지명 공무원
5	위원	산단민관협의회	위원	김세훈	○	민간전문가 (위원장 위촉)
6	위원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엄수원	○	민간전문가 (환경청 추천)
7	위원	서학동 예술마을 현장지원센터	센터장	고남수	○	민간전문가 (전주시장 추천)
8	위원	동서학동	주민자취 위원	김나희	○	주민대표 (동장 추천)
9	위원	서서학동	주민자취 위원	박영진	○	
10	위원	전북환경운동연합	팀장	문지현	○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추천)

### 3.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

<p style="text-align: center;">☑ 위원장</p>	<p style="text-align: center;">☑ 전국환 위원 - 1</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 style="text-align: center;"><b>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서면) 의견서</b> [서학동 예술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p> <p>☐ <b>총괄 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계획은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및 서서학동 일원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개발기본계획으로,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대안 마련 등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구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경관, 교통여건, 관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설정을 통해 의도하는 목적 및 그 달성 여부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제시</li> </ul> </li> <li>☐ <b>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b></li> <li>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향후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제시하여야 함</li> </ul> </li> <li>2. 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구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및 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변 주거지역의 정온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충녹지 확보 등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ul> </li> <li>3.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은 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 전략과 방법, 위치와 시기,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설정 가능한 대안을 No Action을 포함하여 3개 이상 설정하여야 함</li> <li>- 설정된 대안별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대안 선정</li> </ul> </li> <li>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항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의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분류·작성하여야 함</li> <li>- 평가항목은 중점평가항목 13개, 일반평가항목 4개로 조정(제외항목 5개)</li> </ul> </li> </ul> <p style="text-align: right;">- 1 -</p> </div>												
<p style="text-align: center;">☑ 전국환 위원 - 2</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auto; width: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점평가항목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지형·지질, 위락·경관, 수질, 대기질, 도양, 소음·진동,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토지이용, 주거, 산업</li> <li>· 일반평가항목 : 기상, 수리·수문, 온실가스, 약취</li> <li>· 제외항목 : 해양환경, 위생·공중보건, 전파장애, 인구, 일조장애</li> </ul> <p>○ 평가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된 평가항목별로 구체적인 평가범위를 선정하고 중점항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평가범위를 확대</li> </ul>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적사항, 근거자료 등을 수록·제시</li> <li>- 문헌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자료 활용</li> <li>- 선정된 대안별로 세부항목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15호)』에 따라 환경영향을 비교·평가 하되, 다음의 항목에 대해 중점 검토하여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함</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항 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의 건</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td> <td>- 상위계획 검토 시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계획내용과 관련된 관련계획(도도건설승리계획, 공민조성계획 등) 및 환경관련계획(환경보전계획, 오염총량관리기본(시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검토</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td> <td>-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멸종보존종 등 동·식물 현황을 조사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강구 - 동·식물상 문헌조사시에는 '전국 자연환경조사보고서' 및 인용 가능한 문헌자료(인근의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등)를 포함 - 개발이 용이한 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사유를 명확하게 제시 - 생태자산도, 위생자산, 토지의상평가 등 제반 현황자료를 제시하고, 변경 전·후 항공사진 등은 육안상 비교가 가능하도록 동일한 축척으로 제시</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수질</td> <td>-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개발이 용이한 용도지역으로의 변경 최소화 - 계획지구 해당 구역의 수질오염총량 할당범위 이내에서 개발 가능 여부 검토</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2 -</p> </div>	항 목	의 건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 검토 시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계획내용과 관련된 관련계획(도도건설승리계획, 공민조성계획 등) 및 환경관련계획(환경보전계획, 오염총량관리기본(시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검토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멸종보존종 등 동·식물 현황을 조사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강구 - 동·식물상 문헌조사시에는 '전국 자연환경조사보고서' 및 인용 가능한 문헌자료(인근의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등)를 포함 - 개발이 용이한 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사유를 명확하게 제시 - 생태자산도, 위생자산, 토지의상평가 등 제반 현황자료를 제시하고, 변경 전·후 항공사진 등은 육안상 비교가 가능하도록 동일한 축척으로 제시	수질	-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개발이 용이한 용도지역으로의 변경 최소화 - 계획지구 해당 구역의 수질오염총량 할당범위 이내에서 개발 가능 여부 검토	<p style="text-align: center;">☑ 전국환 위원 - 3</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auto; width: 8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토지 이용</td> <td>-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연환경을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 수립 - 기존 시설을 설치현황(현장사진 포함)과 시설 신설 등 정비계획, 사유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시행 시 친환경적 생태공법을 적용</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위락·경관</td> <td>-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업지 및 주변 경관영향 분석(주요 조망점의 사업 전·후 비교) 및 이에 대한 저감 방안 제시 -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심의 대상여부 검토 -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거시적, 미시적 관점에서 경관영향을 분석하고 저감방안을 제시</td> </tr> </tbody> </table>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등의 의견수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실시</li> <li>- 주민 등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반영</li> </ul> <p>6.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5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동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0. 2. .</p> <p style="text-align: right;">환경영향평가협의회      직 위 :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 성 명 : 전 국 환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3 -</p> </div>	토지 이용	-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연환경을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 수립 - 기존 시설을 설치현황(현장사진 포함)과 시설 신설 등 정비계획, 사유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시행 시 친환경적 생태공법을 적용	위락·경관	-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업지 및 주변 경관영향 분석(주요 조망점의 사업 전·후 비교) 및 이에 대한 저감 방안 제시 -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심의 대상여부 검토 -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거시적, 미시적 관점에서 경관영향을 분석하고 저감방안을 제시
항 목	의 건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 검토 시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계획내용과 관련된 관련계획(도도건설승리계획, 공민조성계획 등) 및 환경관련계획(환경보전계획, 오염총량관리기본(시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검토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멸종보존종 등 동·식물 현황을 조사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강구 - 동·식물상 문헌조사시에는 '전국 자연환경조사보고서' 및 인용 가능한 문헌자료(인근의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등)를 포함 - 개발이 용이한 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사유를 명확하게 제시 - 생태자산도, 위생자산, 토지의상평가 등 제반 현황자료를 제시하고, 변경 전·후 항공사진 등은 육안상 비교가 가능하도록 동일한 축척으로 제시												
수질	-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개발이 용이한 용도지역으로의 변경 최소화 - 계획지구 해당 구역의 수질오염총량 할당범위 이내에서 개발 가능 여부 검토												
토지 이용	-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연환경을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 수립 - 기존 시설을 설치현황(현장사진 포함)과 시설 신설 등 정비계획, 사유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시행 시 친환경적 생태공법을 적용												
위락·경관	-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업지 및 주변 경관영향 분석(주요 조망점의 사업 전·후 비교) 및 이에 대한 저감 방안 제시 -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심의 대상여부 검토 -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거시적, 미시적 관점에서 경관영향을 분석하고 저감방안을 제시												

☑ 은시문 위원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 총괄의견
  - 사업대상지가 전주천과 인접하고 있어 수계에 대한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주변환경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선정
    - 계획지구 북측으로 전주천이 인접하고 있어,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및 수환경의 보전 평가대상 지역을 전주천 및 주변지역일정범위를 포함하여 설정이 필요하며, 시간적 범위를 운영시 포함 설정하여야 함
  2. 토지이용구상안
    - 의견 없음
  3. 대안
    - 의견 없음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자연환경의 보전) 환경영향 예측·평가시 현지조사를 충분히 실시할 수 있도록 방법 설정 필요
    - (수환경의 보전) 강우시 우수(비점오염원)에 대한 수계 영향 예측·평가 필요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운영시 하수도시설(하수관로)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포함

2020. 2. 6.

심의위원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 김성수 위원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 총괄의견
  - 해당 구역은 개발취주의 사업보다는 현존하는 가치를 재생하는 사업이 진행되므로 환경이 변화되는 최소한의 지료가 설정되고 지속가능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필요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선정
    -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대체적으로 적정하나, 주변지역에 대한 공간적 규모의 구체적인 수치 제시 필요
  2. 토지이용구상안
    - 본 지구단위계획은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사업과 병행되어 각 용도와 토지이용 구상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므로 사업의 추진방향과 마을의 통상적인 정서가 일치 될 수 있는 계획 수립 방안 필요
  3. 대안
    -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반적인 지역 활용방안 검토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토지이용현황에 대지가 58.9%, 도로를 제외하면 70%에 달하는 주거밀집지역이므로 평가항목에 열섬구역에 대한 언급이 필요함

2020. 2.

심의위원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 김세훈 위원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 총괄의견
  - 등·서학동 안와 뒷마을을 개발함에 있어 구역으로, 전후반의 영향이 있어서, 개발에 따른 수질오염등의 환경영향에 대해 관리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선정
    - 평가대상지역에서 '주변지역'에 대해 설정의 구체적인 공간개념이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ex) 자연환경보전 영향 예방지역 계획지구 북측면 10 Km 이내, 범위) p16-17
  2. 토지이용구상안
    - 등·내방 안에 대한 관련 의견은 없으나, 지역개관 제시할때 건물 파편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 대상지역의 경사면적에 따라 여유 파악 필요. -단순 선제한다 선정, 비점오염 영향 평가 필요하여 권유권 허용(수리-권유권)로 개발행위의 현상 검토 필요함 (권유권 허용가능지점 번호 참조)
  3. 대안
    - 향후 지역 개발에 따른 비점오염 관련사업의 대응을 위하여, 우수관선이나 맨홀(유수관) 개선(개량)시 여과정 시설은 검토하여 바람 (수출 여과 부는 -수처리/보상형, 저수대)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환경영향 요소 추중에 있어서, 운영시 환경에 '비점오염원 발생'이 우려가 있으며, 평가항목에 '자연환경보전-수환경보전'이 구체적으로 항목 반영이 바람. (신안사업용 선정. 기타 항목에 반영구적, 한대도시인정행위에

2020. 1. 30.

심의위원 김 세 훈

☑ 엄수원 위원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 총괄의견
  - 본 구역이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사업 구역으로,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한 관리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선정
    - 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은 대체적으로 적정함.
  2. 토지이용구상안
    - 등·내방 안에 대한 관련 의견은 없으나, 지역개관 제시할때 건물 파편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 대상지역의 경사면적에 따라 여유 파악 필요. -단순 선제한다 선정, 비점오염 영향 평가 필요하여 권유권 허용(수리-권유권)로 개발행위의 현상 검토 필요함 (권유권 허용가능지점 번호 참조)
  3. 대안
    - 향후 지역 개발에 따른 비점오염 관련사업의 대응을 위하여, 우수관선이나 맨홀(유수관) 개선(개량)시 여과정 시설은 검토하여 바람 (수출 여과 부는 -수처리/보상형, 저수대)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본 구역이 1980년 이후에 개발된 지역이므로, 환경영향평가에 '자연환경보전-수환경보전'이 구체적으로 항목 반영이 바람. (신안사업용 선정. 기타 항목에 반영구적, 한대도시인정행위에

2020. 1. 30.

심의위원 엄수원

<p style="text-align: center;">☑️ 고남수 위원</p>	<p style="text-align: center;">☑️ 김나희 위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의견서</b></p> <p>□ 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중점적 계획 되어야 함</li> <li>○ 기존의 소상공인 및 공방, 갤러리등 문화예술활동을 증진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필요함</li> <li>○ 소음 및 경관 등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 기존 상인들의 상업활동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및 안전 및 교통 등의 영향을 미치는 상업 행위에 대한 신규입점을 제한 필요</li> </ul>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함</li> <li>○ 대상지에 인접한 전주천, 완산칠봉, 학산 등 생태, 경관자원 등과 조화를 이루며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범위 설정하고 진행해야 함</li> </ul> <p>2. 토지이용구상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함</li> </ul> <p>3.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전주부설초등학교, 전주교육대학교 등 교육시설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생활, 주거환경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필요</li> </ul> <p>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함</li> <li>○ 사업대상지는 한옥마을과 인접하며, 서학로 주변은 공방, 상가 등이 다수 분포하여 상업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주민들의 주거지역으로 사업진행시 주거주민과 사업행위를 하는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 필요</li> </ul> <p style="text-align: right;">2020. 02. 03 심사위원 고 남 수 </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b></p> <p>□ 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들과 마을사람과 소통하면 상이 좋은 마을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li> </ul>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함.</li> </ul> <p>2. 토지이용구상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함.</li> </ul> <p>3.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과 소통하면 함께 상이 좋은 마을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인접한 상인들 마음은 부랑</li> </ul> <p>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함</li> </ul> <p style="text-align: right;">2020. 2. 3. 심의위원 김나희 </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b></p> <p>□ 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들이 어우러져 있는 공간임.</li> <li>○ 위와 같은 예술인들의 상업행위도 중요</li> </ul>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li> </ul> <p>2. 토지이용구상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li> </ul> <p>3.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학로와 예술인들의 거리도 있는 행안과 행안로 대안</li> </ul> <p>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들의 직업 활동 자유 권익 공간</li> <li>○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li> </ul> <p style="text-align: right;">2020. 02. 심의위원 박영진 </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b></p> <p>□ 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학동 예술마을 지구단위계획 및 계획 결정에 따른 내용을 확인함. 서학동 예술마을의 활성화 도모 및 문화예술공간의 지속성에 따른 구역 변경의 건으로 허용용도 및 불허용도, 규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더 추가할 것을 제안함.</li> <li>○ 도시기반시설로 공원 및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주민, 찾아오는 시민(관광객), 예술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함.</li> <li>○ 계획지구의 주변환경과 (한옥마을, 남부시장 등) 연계해 보행환경평가를 통해 보행환경, 동선 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어린 보호구역 등 보행환경의 변화가 필요함.)</li> </ul>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구간 1km 이내에 야생동물의 이동통로와 서식지로 이용되는 전주천(2등급)이 있기 때문에 평가 대상지역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li> <li>○ 노후화된 주택, 계획구간과 가까운 곳에 전주천이 있어, 상하수도 현황 파악이 필요함.</li> </ul> <p>2. 토지이용구상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진행하지만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공원, 녹지 등이 지구단위계획에 확보될 것을 제안함.</li> </ul> <p>3. 대안</p> </div>

☑ 문지현 위원 - 2	
<p data-bbox="272 409 705 600">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계획지구의 주변환경과 (한옥마을, 남부시장 등) 연계해 보행 환경평가를 통해 보행환경, 동선 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2020. 1. 31.  심의위원 문지현 </p>	

### 3.3 심의의견 반영결과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은 「환경영향평가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평가항목을 선정하였다.

〈표 3.3 - 1〉 협의회 심의의견 반영 평가항목 선정 결과

평가항목		평가준비서	초안 검토서	선정사유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선정	선정	지침에 의거 선정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선정	선정	지침에 의거 선정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선정	선정	지침에 의거 선정
		자연환경자산	선정	선정	지침에 의거 선정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선정	선정	지침에 의거 선정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위락·경관	선정	선정	지침에 의거 선정
	수환경의 보전	수질 (수리·수문)	선정	선정	지침에 의거 선정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선정	선정	지침에 의거 선정
		대기질	선정	선정	지침에 의거 선정
		악취	미선정	선정	협의회 의견 반영
		온실가스	미선정	선정	협의회 의견 반영
		토양	선정	선정	지침에 의거 선정
		소음·진동	선정	선정	지침에 의거 선정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선정	선정	지침에 의거 선정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선정	선정	지침에 의거 선정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선정	선정	지침에 의거 선정
	주거		선정	선정	지침에 의거 선정
	산업		선정	선정	지침에 의거 선정

## 제4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4.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가.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의거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내용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표 4.1 -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구 분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법제11조 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정책계획(이하 "정책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4.2 의견 수렴 경위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과 관련하여 시행령[별표2]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다.
-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표 4.2 - 1〉 주민 등의 의견수렴

구 분	내 용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3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의견수렴 계획

### 4.3.1 평가서 초안의 공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계획의 시행자인 전주시의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일간신문,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지역신문에 1회 공고토록 함

### 4.3.2 평가서 초안 공람

-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은 법 규정에 의거 14일 이상 범위에서 설정함.
- 전주시의 해당 동사무소 등 대상 지역에 1개소 이상 평가서 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공람장소는 전주시와 추후 협의).

- 전주시 홈페이지에 평가서 초안의 요약서를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함.

### 4.3.3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평가서 초안 공람 기간 중 1회 실시
  - 설명회 장소는 전주시와 협의하여 결정
  -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로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

### 4.3.4 의견제출 방법

-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전주시에 의견제출